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99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㈜다이나믹디자인

2. 조치내용

□ **(원안의결)** ㈜다이나믹디자인 과징금 740만원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○ 회사는 '21.8.11. ◎◎◎◎◎㈜ 등*을 인수인으로 하여 제5회차(130억원) 및 제6회차(170억원)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,

* 제5회차CB－◎◎◎◎◎㈜(100억원), ◇◇◇◇◇◇㈜(15억원), □□□□□□□□□㈜(15억원) / 제6회차CB－㈜▽▽▽▽▽(70억원), ㈜▷▷▷▷(20억원), ㈜♧♧♧♧♧(5억원), ⊙⊙⊙(5억원), ㈜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(70억원)

- 동 보고서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*을 기재 누락한 사실이 있음

* 부동산(광주광역시 ■■ ■■■ ■■■■ 토지 및 건물 1~6동)에 대한 담보신탁 우선수익권 및 담보부동산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

나. 근거법규

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1조 제1항 제9호, 제429조 제3항 제1호,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4호